

**제122차(2018학년도 제4회)  
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회 회의록**

이사정수 8인	재적이사 8인
감사정수 2인	재적감사 2인

1. 일 시 : 2018년 8월 9일(목) 11:00~12:20(회의소집 통보일 : 2018년 7월 31일)

2. 장 소 : 성수동 카페성수

3. 참석인원 : 이사 6인      정희경, 박상증, 구성희, 이장우, 임청산, 이선호  
 감사 2인      장지환

4. 불참인원 : 이사 2인      이인호, 이병훈  
 감사 1인      이민재

5. 안 건 : 제1호안 : 정관변경(안) 심의의 건  
 제2호안 : 교원징계요구 의결 제청 심의의 건  
 제3호안 : 2018학년도 제1차 대학 불용물품 처분 심의의 건  
 제4호안 : 기타 안건

6. 회의내용

개 회 기 도 : 박상증 이사가 개회기도를 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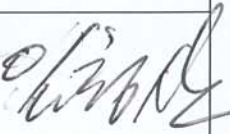
성 원 보 고 : 실무자가 학교법인 이사 8인중 이사 6인과 감사 2인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학교법인 청강학원 제122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.

전차회의록채택 : 실무자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사장이 채택 여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다

업 무 보 고 : 실무자는 법인업무에 관하여, 이수형 총장은 학교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니 전원 찬성으로 접수하다.

제1호 안건 : 정관 변경(안) 심의의 건

간 서 명	박상증	이선호	임청산
			

정희경 이사장 : 1호 정관변경(안) 안건을 상정하고, 실무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실무자 : 정관변경,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, 평의회회 구성, 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·기능, 정년 등 관련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후 정관 변경 신규대조표를 설명하다.  
(신규대조표 붙임자료 첨부)

정희경 이사장 : 전체이사의 의견을 묻고,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이장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.

제2호 안건 : 교원 징계 요구 의결 제청 심의의 건

정희경 이사장 :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,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박영철 부총장 : 교원 징계요구 의결 제청 사유는 겸직이 불허되었음에도 외부 영리활동을 계속하여 교원 복무규정 제5조(영리업무의 금지), 5조의2(겸직허가)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시행지침을 위반하였으며, 징계요구 제청 대상자는 [REDACTED] 라고 설명하다. 징계요구 제청은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음을 부연 설명하다.

실무자 : 징계위원회 구성(안)을 내부위원 4명, 외부위원 1명, 간사1명으로 구성하였다고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교원 징계요구 의결 제청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 안건처리를 요청하니,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이선호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제3호 안건 : 2018학년도 제1차 대학 불용물품 처분 심의의 건

정희경 이사장 :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,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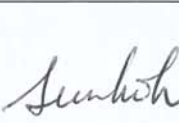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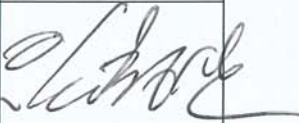
실무자 : 불용물품 총액은 520,297,098원으로 이중 매각은 161,247,178원, 폐기는 359,049,92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518,677,914원으로 잔존가액은 1,619,184원이라고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2018학년도 제1차 대학 불용물품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 안건처리를 요청하니, 박상증 이사의 동의와 임청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간서명대표자선임 : 정희경 이사장이 학교법인이사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중 3인 이상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, 박상증 이사, 이선호 이사, 임청산 이사를 추천하니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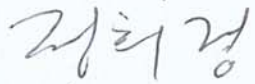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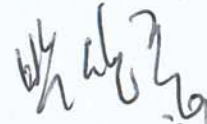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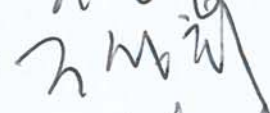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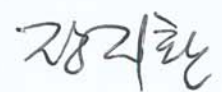
폐회선언 : 정희경 이사장이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박상증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2시 20분이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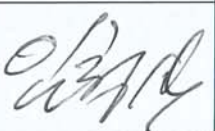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간서명	박상증	이선호	임청산
			

2018년 8월 9일

학교법인 청강학원

이사장 정희경   
이사 박상증   
이사 구성희   
이사 임청산   
이사 이장우   
이사 이선호   
감사장 지환 

간서명	박상증	이선호	임청산
			

< 정관 변경 신규대조표 >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----- 의결을 거쳐 <u>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u> 다만,-----	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----- 의 결을 거쳐 <u>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-----			
제2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상근이사는 이사의 <u>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장을 보좌한다.</u>	제2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상근이사는 이사의 <u>호선으로 선출한다.</u>			
제31조의3(평의원회의의 구성 등) ①생략 ②평의원의 <u>임기는 1년으로 하되,</u>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임 치 해촉되며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 ③생략	제31조의3(평의원회의의 구성 등) ①생략 ②평의원의 <u>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학생 평의원회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u>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임 치 해촉되며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 ③생략			
제31조의4(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)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. 교원 5인: 보직교원 및 전임교원</u> <u>2. 직원 3인: 직원(5년 이상 근속)</u> <u>3. 학생 1인: 재학생 중 대표</u> <u>4. 동문 1인: 동문대표</u> 5. 생략	제31조의4(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)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. 교원 5인</u> <u>2. 직원 3인</u> <u>3. 학생 1인</u> <u>4. 동문 1인</u> 5. 생략			
제31조의7(기능)생략 1. ~ 6. 생략 7. (신규)	제31조의7(기능)생략 1. ~ 6. 생략 7. <u>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			
제70조(정년)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<u>제74조(5급이상 60세, 6급이하 57세)</u> 를 준용한다.	제70조(정년)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<u>제74조</u> 를 준용한다.			

간 서 명	박상증	이선호	임청산
	